

검 토 보 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2월 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2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음.

□ 제안이유

현재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단속, 각종 시설치 시설물의 관리업무 등을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 공단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공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공단은 법인으로 함.(안제2조)
2. 공단의 자본금은 20억원 이내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하며 출자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안제4조)
3.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내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제5조)
 - 가. 목록
 - 나. 명칭
 -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자본금에 관한 사항
 마. 사업에 관한 사항
 바. 임·직원에 관한 사항
 사.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아.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차. 공고에 관한 사항
 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제6조)
5.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임무를 총괄함.(안제7조)
6. 4인 이상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를 두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함.(안제8조)
7.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안제9조)
8.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둠.(안제10조)
9. 공단의 임·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안제11조)
10.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함.(안제12조)

11.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함.(안제13조)
 - 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 나.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
 - 다.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물의 위탁관리
 - 라. 기타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12. 공단은 매사업년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제15조, 제16조)
13.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제17조, 제18조)
14.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음.(안제20조, 제21조)
15.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안제23조)
16. 시장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제24조)
17. 동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제25조)

□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사업중에서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상 그 종류는 자치단체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3가지 유형이 있음.
- 이번에 우리시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시에서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까지 시에서 담당 하던 공영주차장관리, 시민회관 및 도서관 등의 시설치 시설물의 관리, 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인력감축과 전문성 제고에 따른 경영수지의 확대, 대민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동 조례안은 비교적 지방공기업법상의 제규정에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나 공단의 정관과 관련하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안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칭함) 제76조 제2항 및 법 제49조 제3항에 규정한 당초 정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안 제13조 제1항의 사업내용에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법 제76조 제2항과 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53조 규정상의 위탁방법과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조례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익금을 시의 세입으로 할 경우 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규모 확대시에는 시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법 제71조의2 규정 관련),
안제17조 '계리의 원칙'에 공기업 경영상 꼭 필요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계리의 내용(법 제64조의2 규정 관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법 제76조 제2항 및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공단의 설립·업무·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는 인력 및 직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정관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며, 또한 예산·결산은 시장의 승인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에는 의회차원의 통제수단이 없는 상태임.
- 그리고 동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운영될 경우 법인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다 수익성이 높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영주차장 시설의 확충이 미흡한 시의 여건상 주민과의 잦은 마찰이 우려되며, 공무원 신분을 떠난 직원들의 노사분규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공단운영 방법에 있어 수입금을 시의 세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공기업의 기본 원칙인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독립채산제를 근간으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동 조례안상의 제규정과도 상치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동 시설관리공단의 설치에 시 공무원의 인력감축과 전문성 제고에 따른 경영수지의 확대 및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시의 실정상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